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1	
		배포일시	2021. 11. 2 / 총 3매(본문2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 당 자	·과장 김광림, 사무관 나은종, 주무관 정재엽 ·☎ (044) 201-3539, 3546		
보도일시		2021년 11월 24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4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	

건설현장 인력·장비 갈등 국토부에 직접 신고하세요

- 24일부터 국토부 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 -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건설현장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"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"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□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채용,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,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,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,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.
 -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'19.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노동조합,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'건설 산업 갈등해소센터'를 설치하였으나, 신원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는 없었다.
 - 반면, 올해 10월부터 '건설현장 불법행위 TF'(국무조정실 주관)의 **갈등** 현장 점검·감독이 시작된 이후, 국무조정실, 국토부,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·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.
- □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로 **분산된 제보창구**를 **단일화**하고, 신고사항을 **체계적으로 관리**하고 **신속히 처리**할 수 있도록 **국토** 교통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-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하여 부당하게 청탁·압력·강요하거나,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를 방해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*하며,
 - * (신고방법) 044-2014-112, con112@korea.kr
-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, 공정위,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,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.
- 아울러,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**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**할 계획이다.
- □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"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"이라면서,
 - "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,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**업체의 협조**가 **필수**"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 산업과 나은종 사무관 (☎044-201-353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운영개요

□ 추진배경

- 건설현장 내 건설근로자 채용, 건설기계 임대 등에 대한 청탁, 강요가 만연함에 따라 공기지연, 잦은집회 등으로 건설사·국민 피해 발생
-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'19.7월 **노동조합, 건설협회** 등에 '**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**'를 **설치**하였으나, 신원노출 우려로 **실적은 미비**
- 따라서, 국토부 본부 내에서 직접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'건설 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' 운영을 추진

□ 주요임무

- 건설근로자 채용 또는 건설기계 임대에 관하여 부당하게 **청탁·강요** 하거나 이를 위하여 **건설공사를 방해**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
-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소관기관에 전파*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,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 * 고용부, 공정위, 경찰청

□ 처리절차

1.신고접수 및 번호부여

- 건설현장 갈등상황 통합접수(☎ 044-2014-112)
- 신고번호: 연도-기관-번호 (ex) 2021-본부-1)

2.의심사항 분류 및 증거자료 취합

Ţ

Ţ

- 신고내용을 토대로 의심 위반사항 및 소관기관 분류
- 사진, 영상, 기록 등 증거자료 취합(메일, 등기 등)

3.소관기관 공문발송 ↓

• 위반행위별 소관기관에 사건처리 요청(공문)

4.처리상황 관리

1) 번호별 처리상황 관리(주단위)

- 담당자 확인(성명, 소속, 연락처), 조치현황 파악

2) 기관별 처리상황 관리(분기별)

 $\hat{\mathbf{U}}$

5.진행상황 공유 및 결과 통보

• 신고자에게 진행상황 공유

• 신고자에게 최종 처리결과 통보